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23. 4.



학생지원처 입학관리팀

I

모집인원

1.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 시기	모집 단위	전형명	모집인원(명)			비고
			정원 내	정원 외	계	
수시	초등 교육과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42	-	42	이월 인원 포함*
		학생부종합(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60	-	60	
		학생부종합(광주인재전형)	50	-	50	
		학생부종합(전남인재전형)	50	-	50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10	-	10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8	-	8	
		학생부종합(장애인대상자전형)	-	10	10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10	10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	7	7	
		소계	220	27	247	
정시 (나군)		수능위주(일반전형)	108	-	108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이월하여 선발
		수능위주(장애인대상자전형)	-	-	-	
		수능위주(농어촌학생전형)	-	-	-	
		수능위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	-	-	
		소계	108	-	108	
총계			328	27	355	-

* 2023학년도 정원 내 이월 인원 2명 반영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정원 내 모집인원은 수능위주(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정원 외 전형은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수시모집

1.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전라남도교육감 추천전형)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이 전형 입학생에게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전라남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 임용 후 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함
학생부종합 (광주인재전형)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종합 (전남인재전형)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 종합 (사회 통합 전형)	공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아동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 거주한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 지원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거주한 자에 한함
	만학도	- 2024. 3. 1. 기준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자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전형)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다만,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전형명	지원자격
<p>학생부종합 (장애인대상자전형)</p>	<p>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p>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p>	<p>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졸업예정자 포함)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I (6년) : 중·고등학교 전과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u>본인·부모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u> - 유형 II (12년) :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u>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u>
<p>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p>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1단계 (1,000점)	선발 비율	2단계 (1,000점)	선발 비율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서류평가 100% (1,000점)	400%	1단계 점수 70% (700점) + 면접 30% (300점)	100%
학생부종합(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200%		
학생부종합(광주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남인재전형)		300%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시 반영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기준

전형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응시 제한 없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학생부종합(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학생부종합(광주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남인재전형)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학생부종합(다문화가정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Ⅲ 정시모집

1.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지원자격</p>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p> <p>- 반영 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p> <p>※ 영역별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 제한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수능위주 (일반전형)</p>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수능위주 (장애인대상자 전형)</p>	<p>공통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수능위주 (농어촌학생전형)</p>	<p>공통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유형Ⅰ(6년) : 중·고등학교 전 과정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부모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p> <p>- 유형Ⅱ(12년)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수능위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p>	<p>공통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p> <p>-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p>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반영비율 (반영총점)	선발비율	비고
수능위주(일반전형)	수능 100% (1,000점)	100%	수능 백분위 및 등급 활용
수능위주(장애인대상자전형)			
수능위주(농어촌학생전형)			
수능위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전형)			

※ 백분위 반영 영역 : 국어, 수학, 탐구(2과목 평균)

※ 등급 반영 영역 : 영어(등급별 반영점수), 한국사(등급별 가산점)

※ 정원외 전형은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이월하여 선발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별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제한 및 가산점 없음

나. 반영 영역 및 영역별 반영방법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합계
반영 방법	백분위	백분위	등급 (등급별 반영점수)	백분위	등급 (등급별 가산점)	-
배점	250점	250점	250점	250점	-	1,000점
비율	25%	25%	25%	25%	-	100%
산출공식	$\left(\frac{\text{국어, 수학, 탐구(2개평균) 영역 백분위 합}}{300} \right) \times 750 + \text{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 \text{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 한국사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1,000점)를 초과할 수 있음

〈영어 등급별 반영점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250점	240점	230점	220점	210점	200점	190점	180점	170점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산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기준

전형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및 최저학력기준
수능위주(일반전형)	<p>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에 응시해야 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p>
수능위주(장애인대상자전형)	
수능위주(농어촌학생전형)	
수능위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전형)	